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1부. 끝.

2024년 4월 12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소영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류종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육정미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화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임인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33
----------	------

발의년월일 : 2024. 4. 12.

발의의원 : 박소영, 권기훈,
김재우, 김정옥,
김태우, 류중우,
박종필, 육정미,
윤영애,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황순자
의원(16명)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체청렴도 평가,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 클린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청렴도 향상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제13조 및 제 14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다. 공사·공단의 임직원

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마.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사·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 부패취약분야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
3. 청렴정책의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2. 청렴도 조사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조사 및 연구
4.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청렴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클린콜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업무 및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클린콜”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클린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클린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업무 및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등 조사
2. 클린콜 결과 통계작성 및 분석
3. 클린콜 결과에 대한 직무감찰

④ 감사위원회는 클린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클린콜 명부 작성과 클린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클린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직자, 기관·단체 및 임직원, 시민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인센티브)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